

< 제출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>

대상별 분류	구비서류	발급일 기준	유의사항
전체 신청자 구비 서류 (필수)	1. 특별공급 신청서	-	- 붙임1 특별공급 신청서류 및 배점기준표 작성
	2.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		
	3. 개인정보 동의서		
	4. 무주택 서약서		
	5. 주민등록표등본	신청기간 내 발급	- 세대원 수 확인용 *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(배우자의 세대원 수 확인) 제출
	6. 주민등록표초본	신청기간 내 발급	- 서울시 거주기간(최종 전입일) 확인용
	7. 가족관계증명서	신청일 기준 <u>3개월 이내</u> 발급한 서류	- 배우자 관계 확인용
	8.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또는 지방세 미과세증명서 * 동 주민센터, 구청, 위텍스 발급 가능	신청일 기준 <u>3개월 이내</u> 발급한 서류 (매년 재산세가 부과되는 7월, 9월은 <u>신청기간</u> <u>내</u> 발급)	- 세대구성원 전원 (미성년자, 외국인배우자 포함) 의 과세증명서 - 재산세(주택)항목, 최근 10년, '전국' 단위로 조회 - 세대원에는 직계존비속, 배우자만 포함(형제자매 등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징구하지 않음) -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(위임할 경우 위임한 자의 도장, 위임한 자의 신분증 지참해야 함)
해당자 구비 서류 (해당될 경우 필수)	1. 위임장	-	- 수임자는 신청자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(동일세대 여부 무관) 에 한정 - 위의 수임 가능 가족이 없는 장애인에 한해 친인척 및 장애인 활동지원사 수임 가능 - 신청행위만 대리하며, 신청서류는 장애인 명의 로 작성 * 위임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각각의 신분증 사본(필수)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, 장애인 활동지원 증빙서류 등을 첨부, 신청자 본인의 도장 지참 - 권한없는 자에게 위임하는 등 불법 행위 발견시 해당 신청건은 무효 처리될 수 있음

	2. 등기사항증명서(등기부 등본) * 무인발급기, 등기소, 인터넷등기소 발급 가능	신청일 기준 <u>3개월 이내</u> 발급한 서류	- <u>재산세(주택) 납부자</u>의 경우 필수 - 주택을 여러 번 매각한 경우, 마지막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서만 제출 -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확인용(매각일자는 '등기접수일'을 기준으로 함) - 주택이 아니거나 이미 멸실되었다는 등 무주택으로 볼 사유가 있는 경우 입증서류 필수 (예 : 건축물 멸실신고서 등) - 건물이 있고, 건물의 용도가 주택(또는 거주용)이며, 현재 건물 소유주가 신청자 또는 세대구성원이면 유주택 세대로 봄 -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 건물의 용도 파악이 어려울 경우, <u>건축물관리대장</u>을 추가로 징구할 수 있음
	3. 건축물대장 * 무인발급기, 구청, 정부24 발급 가능	신청일 기준 <u>3개월 이내</u> 발급한 서류	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 9호에 따른 무주택 증빙 시 필수 - 대장상 용도(공동주택, 단독주택, 연립다세대, 도시형생활주택) 및 전용면적 명확히 판별 가능하여야 함
	4. 주택가격확인서 * 동 주민센터, 인터넷 발급 가능	신청일 기준 <u>3개월 이내</u> 발급한 서류	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3조 9호에 따른 무주택 증빙 시 필수 * 처분일 이전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택공시 가격 기준 *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,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 기준
	5. 세대원 장애인 증명서	신청일 기준 <u>3개월 이내</u> 발급한 서류	- 배점기준표 상 '세대원 중 장애인 有'에 해당하는 경우 필수 제출
포기자 구비 서류	1. 기관추천 포기 서약서	-	- 입주자모집공고 후 포기 의사가 있을 경우 제출(재추천 제한 방지)